

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

※ []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√ 표를 합니다.

당사자 구분		[] 신청인		[] 피신청인		
사건	사건번호	제 호(년 월 일)				
	사 건 명					
	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					
수락 여부		1. 조정안을 수락합니다.			수락 시 ○표를 합니다.	
		*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"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"이 있는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합니다.				
		2. 조정안을 거부합니다.				
		거부 시 ○표를 합니다.				

위와 같이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당사자(법인은 대표자,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) :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대리인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1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4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.

2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74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안을 수락하더라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없습니다.